경영유의사항·개선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충남)아산신용협동조합

2. 제재조치일 : 2023. 7. 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2건, 개선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손실흡수능력 강화 필요

내규「리스크관리규정」제3조 및 제4조 등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 위험(신용리스크)을 적정하게 통제하여야 하는데도,

2020년부터 대출금이 증가하고, 신용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에도,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신협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커버리지비율(대손충당금적립액/고정이하여신)이 신협 평균에 미달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하므로,

앞으로,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,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시기 바람

(2) 여신감리회 운영 미흡

내규「여신업무방법서」제4편 제1장 등에 의하면 여신감리를 통해 여신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차주 등 채무관계자의 영업실적, 신용상태 등 상환능력을 점검하고 부실요인 발견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
이번 검사대상기간 중 감리대상채권에 대한 여신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담보물에 대한 소송 진행, 법인대출의 부실징후 확인 소홀 등의 사례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감리 결과 부실요인의 보완조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바,

앞으로, 정기 및 수시 여신감리를 철저히 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, 감리 결과 보완조치 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시기 바람

나. 개선사항

(1) 직원 성과급여 지급기준 합리화

내규「급여규정」제11조의1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매년 그 해의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, 사업성과의 측정기준을 당기순이익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
2022년 자체결산 결과, 총자산순이익률이 신협 평균에 미달하는 등 다른 사업성과 지표가 낮음에도 불구하고,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 직원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,

앞으로, 직원 사업성과 측정기준에 연체율, 총자산순이익률, 내부통제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성과급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